

경찰 고위직 대대적 승진·전보

- 경찰청차장 강희락·서울청장 홍영기·경기청장 김상환·
경찰대학장 어청수 치안정감 등 26명 이동 -



이택순 경찰청장이 보직신고를 받고 있다.

경찰청이 치안정감 4명과 치안감급 26명에 대한 인사를 지난 1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경찰청 차장에 강희락(姜熙洛·54·경북) 부산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에 홍영기(洪永基·51·전남) 전남경찰청장, 경기경찰청장에 김상환(金相奂·53·서울) 경남경찰청장이 각

각 치안정감으로 승진발령됐고, 경찰대학장에는 어청수(魚淸秀·51·경남) 경기경찰청장이 전보됐다.

강희락 경찰청 차장은 경북 성주 출신으로, 경북사대부고·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고시(26회)를 거쳐 경찰에 입문했고, 홍영기 서울경찰청장은 전남 신안

출신으로, 목포고·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나와 간부후보 29기 출신이다.

또한 사법고시(29회) 출신인 김상환 경기경찰청장은 서울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지난 2005년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거쳤다.

특히, 이번엔 단행된 치안감급 이상 경찰 고위간부 인사는 지역 안배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택순 경찰청장의 친정체제를 강화했다는 평가 속에서, 경찰청 관계자는 이택순 청장의 취임 2년째를 앞두고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데 인사의 초점을 두었다는 설명이다.

출신 지역별로 보면 인력 비중에 따라 지역균형을 대체로 유지했지만 최근 감소 추세였던 영남 출신 비중이 다소 늘어, 치안정감 4명 가운데는 경북 출신이 1명, 경남 1명, 전남 1명, 서울 1명이며, 치안감급을 합친 고위간부 30명 가운데 영남 출신이 15명(경북 7명, 경남 5명, 부산 3명)으로 절반에 달하지만 그동안 지역별 비중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승진후보자를 포함한 치안감 승진자 12명은 경남 3명, 부산·경북·전북이 2명씩, 전남·경기·충북 1명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러가지 이유로 치안감 전원이 1951년 이후 출생자로 채워지면서 세대 교체가 1년 가량 빨라진 셈이 되었고, 경찰대 17기 선두주자로 꼽히는 윤재욱 경찰청 기획정보심의관이 경찰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경무관 승진 1년 10개월 만에 치안감 승진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 경찰청은 이달 중 경무관급 인사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강희락 경찰청 차장

▲경북 성주(53) ▲경북사대부고 ▲고려대 법학과 ▲사법시험 26회 ▲경북 청도서장 ▲경기경찰청 수사과장 ▲서울경찰청 형사과장 ▲경찰청 공보관 ▲위싱턴 주재관 ▲경찰청 기획정보심의관 ▲경찰청 수사국장 ▲대구경찰청장 ▲부산경찰청장



어청수 경찰대학장

▲경남 진양(51) ▲진주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학사·사회복지학 석사 ▲경찰 간부후보생 28기 ▲서울 김포공항경찰대장 ▲서울 은평서장 ▲경찰청 공보담당관 ▲청와대 치안비서관 ▲경남경찰청장 ▲부산경찰청장 ▲경기경찰청장



홍영기 서울경찰청장

▲전남 신안(50) ▲목포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학사·석사 ▲경찰 간부후보 29기 ▲전남 장흥서장 ▲경찰청 기획담당관 ▲경찰청 정보2과장 ▲서울 중부서장 ▲경찰혁신기획단장 ▲경찰청 경무기획국장 ▲전남 지방경찰청장



김상환 경기경찰청장

▲서울(53) ▲경기도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9회 ▲경남 고성서장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서울 도봉서장 ▲경찰청 공보담당관 ▲행정자치부장관 치안정책관 ▲서울경찰청 경무부장 ▲청와대 치안비서관 ▲경남경찰청장

「개구리 소년 사건」, 경찰수사 違法 없었다

- 서울중앙지법, 유족들 국가 상대 소송 패소 판결 -



사진은 유골발굴 당시 장면(연합 자료사진)

지난 91년 대구 외통산에서 실종되었던 '개구리 소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과정 중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김명수 부장판사)는 9일 '개구리 소년' 부모들이 『경찰의 위법한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찰의 수사과정과 유골 발굴과정에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초등수사에서 단순 가출이나 실종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 유괴나 타살 등 범죄 관련성 여부 가능성을 배제했고, 그 결과 유해발견을 위한 수색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유해발견 장소가 실종된 김영규 외 4인이 다니던 성서초등학교에서 불과 3.5킬로 떨어진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행방불명된지 11년 6개월이 지나서야 그 유골이 발굴되었다는 주장과 관련 『경찰이 초등수사시 범죄관련 가

능성을 배제하였다거나 유해발견을 위한 수색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경찰이 4차에 걸쳐 수사본부를 운영하면서 안전사고, 가출배회, 범죄(유괴)관련 측면 등 다방면에 걸쳐 수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유골 발굴 과정에서 현장보존의 원칙을 어기고 현장을 훼손해 법민 검거를 위한 시기와 단서를 놓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유족의 입회하에 과학수사반과 법 의학팀의 지원을 받아 현장에서 유골 및 유류품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물을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감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들이 행방불명된 11년 6월이 지나서야 유골이 발견된 이상 시간의 흐름에 의한 자연적 증거멸실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민가에서 발린 곡괭이나 삽 등 연장을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위

법한 현장 발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이 신중히 조사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공판 청구 전에 서둘러 자체온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했다는 수사발표로 범죄로 인한 사망 원인규명을 포기하는 듯한 의사를 표명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잠정적인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자체온사 가능성과 타살 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두고 양자 모두 추정된다고 발표한 것이 오로지 자체온사로 단정 짓고 발표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발표후에도 수사를 계속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엔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김영규 회원(지난 91년 초등수사 당시 대구시경 강력과장)은 『법적 관시문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자체온사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사립구경의 원칙은 언제든지 지켜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족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억울함을 풀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지난 12월 4일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그 귀추가 주목된다.

김 모씨 등 유족 9명은 작년 8월 경찰 수사와 유골발굴 과정에서의 현장 훼손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인권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5천만원씩, 도합 4억 5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었다.

뇌출혈로 쓰러진 동료 위해 일일 찻집 열어

- 서울 광진경찰서 구의 2동 자율방범 순찰대 -



서울 광진경찰서 구의 2동 치안센터 자율방범 순찰대원들이 뇌출혈로 쓰러져生死를 넘나들고 있는 동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일일 찻집을 운영해 화제다.

대원 21명 및 부녀 방범대원들은 지난 11월 29일 치안센터 앞에서 순두부, 떡, 커피 등을 파는 일일 찻집

을 운영, 그 수익금 250여만 원을 쓰러진 동료인 강 양원씨(48세) 가족에게 전달하고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이 곳에서 자율 순찰대원으로 봉사활동을 펼쳐 왔던 강 씨는 최근 겨울철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일해 왔고, 뇌출혈로 쓰러진후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그러나 쓰러진 강 씨는 현재 2천 5백만원짜리 전세 지하방에서 거주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데다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이사까지 가야할 형편이고,生死까지 불투명해 주위 사

람들을 애태우고 있다.

한편 이날 동료들이 일일 찻집을 운영한다는 소식에 박성호 서장을 비롯한 경찰서 직원들도 찻집을 방문해 격려했고, 관내 초등학교, 박스를 주워서 생활하는 할머니 등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십시일반으로 강씨의 쾌유를 위해 정성을 보냈다.

이번 일일 찻집 행사를 위해 동분서주했던 체법서 대원(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책임 연구원)은 『불행에 처한 동료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다행히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마움을 더하며, 강 씨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國民 편의 위한 수사권조정, 정기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

전 근대적인 二重搜查 구조 속에서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수사권 조정을 위해 온 국민의 여망 속에 검·경 간의 구체적 대안협의를 여·야 정치권의 열띤 토론이 전개되고, 사상 最多 인원이 참석한 입법공청회를 거쳐 여·야 국회의원들의 「형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15개월 동안이나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1. 日帝의 잔재인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일본경찰은 이미 57년전(1948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전근대적인 상명하복의 檢·警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고,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갖게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검찰은 존경을, 경찰은 더 큰 신뢰를 받고 있다.

우리도 성숙된 민주사회의 여건에 맞게 인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통제장치를 두고, 경찰과 검찰은 경쟁과 협력의 상호보완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2 수사기간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시분권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지구상에 수사권 없는 경찰은 한국뿐이며 오늘날 전세계의 형사소송절차는 기소의 주체와 수사의 주체로 분리되어 경찰과 검찰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추세에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헌법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사권(개시·종결), 공소권, 형집행권 등을 독점한 막강한 검찰이 1차 수사기관화 하고 있으므로 檢·警간 수사권의 분배로 견제와 경쟁을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면 국민의 권익과 인권은 크게 신장될 것으로 확신한다.

3 더 이상 자질문제, 인권보호라는 구실로 경찰수사권 현실화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지난 20년간 4년제 경찰대학을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정예간부의 양성, 사법·행정고시 합격자 특채, 간부후보생 배출, 법학전공 수사요원 특채, 조사요원 간부화, 인권담당관 배치, 유급 자문변호사제 도입, 피해자 보호회 운영 등의 자질향상과 인권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선진국 수준의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었고 순경채용자의 75%가 대졸학력 이상 수준이 되었다. 따라서 해방이후 60년간 주장되어 온 경찰수사권의 시기상조론은 이제 그 명분을 잃었다.

4 수사분권 요구는 기관 이기주의적 바깥릇 다름이 아닙니다

범죄사건(연간 160여만건)의 97%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법률상 수사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연간 사건관련자 150여만명이 경찰과 검찰에서 중복조사를 받음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국민의 불편해소와 사법서비스 편의증진을 위해 경찰의 독자수사권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大韓民國在鄉警友會 120萬 會員 一同